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호

이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제2조~제4조)

○ 통장 모집공고와 통장후보자 신청 세부사항 규정(제5조~제6조)

○ 통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제7조~제8조)

○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보고 규정(제9조)

○ 통·반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서식 규정(별지제1호~별지제3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66, FAX : 3396-8612, E-mail : junyo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신설 통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요하지 않음)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반장은 그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통장은 통 관할지역 반장은 반 관할지역 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전달, 업무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제5조(통장 모집 공고) ① 통장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통 주요 통행로 2개소 이상에 공고하며, 3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제6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① 동장은 통장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제8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동 공고 제 - 호

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통

○ 통 명: ○○동 ○○통

○ 관할구역:

□ 접수 기간:

□ 통장신청 자격요건

○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동 주민센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자 신청서

본인은 ____동 제____통장 후보자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동	통장

신 청 자	한글		생년월일 (연령)	- - (만 세)	사 진 6개월이내 천연색사진 (3×4㎝)
	한자		성 별	남 / 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해 당 통 전 입 일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연 락 처	휴대폰	010 - -	자 택	02 - -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위		

위와 같이 중구____동 제____통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____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 *본인소개, 지원동기, 통장 선출 시 봉사계획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통장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열람·발급에 동의하고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통장 심사 결과 및 이후 위 기재 사항의 허위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_____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중구 통장후보자 자격확인 및 심사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폰·자택·전자우편), 직업, 직위, 약력(주요경력·봉사활동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통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표

□ 심사일시 : 20 . . .

□ 심사장소 :

□ 평가방법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 통장후보자 (　　동 제　　통)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 -	연락처	자 택)
주 소	도로명주소)						휴대폰)

□ 심사항목

평가 항목	세부 사항	배 점	점 수
신 뢰 도	• 관내 거주기간 • 추천내용 • 반장 및 인근주민의 덕망과 신임도 등	20	
업무수행능력	• 통장 지원동기 및 목적 • 사회경력 • 원활한 업무수행가능 여부 등	30	
행정관심도 및 참여도	• 구 동정사업 참여 및 기여도 • 직능단체 참여도 등 • 반장 경력 유무	30	
봉 사 자 세	• 봉사활동 참여(봉사기간, 봉사내용) • 표창 수상 여부 등 • 대민봉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	20	
총 점			

20 년 월 일

OOO동 통장심사위원 성 명 (서명)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